

GATT 및 WTO, 국제환경협약의 환경관련 조항

무역과 환경의 연계논의(Linking Trade and Environment)는 OECD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95년 WTO 출범 이후 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설치되면서 WTO가 그린라운드라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논의의 핵심기구로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논의는 각종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환경 협약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가올 21세기에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GATT 및 WTO,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의 환경관련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 내용은 지난 10월 환경부 지구환경과에서 발표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편집부>

I. GATT의 환경관련조항

1. GATT 기본원칙

OGATT의 기본원칙은 모든 수입상품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제1조(최혜국대우원칙)와 수입상품을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3조(내국민대우원칙)임

O 따라서 국내환경규제가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동규제는 가트의 기본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환경규제는 시행과정에서 수입상품보다 국내상품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국내상품에 대한 위장된 보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를 않고 있음

O 내국민 대우와 관련하여 최근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수입품의 공정 및 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인데 GATT 패널은 미국-멕시코간 참치/돌고래 분쟁을 통해 내국민 대우원칙

은 상품간의 비교를 의미하며 멕시코의 규정이 단지 미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판정하였음

2. GATT 20조(일방적 예외)

OGATT 제20조는 일정조건하에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별조치를 취하는 많은 국가들이 20조 (b), (g)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음

3. GATT 20조 내용

- ① (b)항 :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② (g)항 : 자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 ③ (h)항 : 체약국간에 제출된 기준에 합치되는 정부 간 상품협정 또는 체약국간에 직접 제출

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한 조치 등의 경우 무역규제조치 인정

○ 다만, 상기조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됨

① 시행조치의 정책범위가 GATT 20조 (b), (g) 항에 명시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또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해당하여야 함

② 시행조치가 의도하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해야 하며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중 최소한의 무역왜곡효과를 갖는 것이어야 함

③ 시행조치는 국가간에 임의적이고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함

○ 그러나 GATT 20조에는 환경이란 용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necessary)”, “정당한(justifiable)”, “위장된 제한조치(disguised restrictions)”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일부 국가들은 이 규정이 자국 관할외에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무역제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통상마찰화하는 사례가 빈번함

(표 1) 환경보호목적의 기술적 장벽

분야	1980~'82	1983~'84	1985~'86	1987~'88	1989~'90	계
대기오염	8	7	13	24	19	71
괴음방출	6	9	1	2	2	20
수질오염	3	1	1	3	4	12
폐기물	1	0	1	2	4	8
위험물질	23	7	7	15	35	87
위험물질운송	2	0	1	1	1	5
방사성물질	0	0	0	2	1	3
종의보존	1	0	1	0	1	3
에너지절약	0	1	0	0	1	2
계	44	25	25	49	68	211

* 자료 : GATT 사무국 문서

4. 동경라운드 기술장벽(TBT) 협정

○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독자적 기술규정 채택 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기술장벽 협정은 '79년 4월 제네바에서 공식 채택되어 '80년 발효되었으며 가입국은 미국, 일본 등 37개국 및 1개 공동체(EU)로서 한국은 '80년 10월에 가입 (표 1) 참조

5. 도쿄라운드 기술장벽협정(TBT)의 주요내용

- ① 각국은 표준채택시 가능한한 국제표준을 채택도록 함
- ② 관련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무역제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표준을 설정하여야 함
- ③ 자국의 기후조건, 지리적 요인, 국가안보, 위생,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독자적 기술규정 채택시 이를 GATT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함(투명성 요건)
- ④ 국가간 분쟁발생시 가능한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

II. WTO 협정상의 환경관련 규정

○WTO 협정은 기술장벽협정, 보조금협정, 농산물 협정 등의 분야에서 환경목적의 차별적 조치가 가능 토록 하는 근거를 확대하는 한편 최소한의 무역제한, 비례의 원칙, 동등의원칙 등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등 환경과 무역관련 규정이 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1. 전 문

○전문에서 “개별국가의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 필요성에 따른 환경보호조치를 지속적인 개발차원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기술장벽 협정

○종전 도쿄라운드 TBT 협정이 분야별 개별협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WTO 체제하에서는 TBT 협정이 WTO 체제내로 정식 편입되는 WTO 회원국은 모두 이를 준수토록 되어 있음

○WTO TBT 협정은 규제가 가능한 기술적 규제 범위에 생산방법 및 공정(PPMs)까지를 포함(TBT 협정 2조 2항)시키고 있으나 환경보호 목적의 PPM 규제가능 범위와 국제무역의 장애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태임

○최소한의 무역제한 관련 범위확대(2조 2항)

- 도쿄라운드 TBT 협정 : “기술적 규제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왜곡효과를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2조 2항)

- 최소한의 무역제한의 기준으로 “채택규정은 규정의 불준수에 따라 야기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설정
- 즉 최소한의 무역제한 여부는 각 환경정책이 가지는 실제 무역제한 효과를 비교해보고 시행하

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환경저해효과 및 국내 동등조치와의 비례성을 감안해야 하며, 덜 무역 제한적인 방법이 존재하거나 환경침해정도에 비해 지나친 것은 비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동등(Equivalence)의 원칙(2조 7항)

- 타국의 규제가 자국의 규제와 상이하다 하더라도 자국규제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긍정적 고려를 하도록 함

3. 보조금협정

○보조금협정 8조 2항은 특정성이 있더라도 비반복, 일시적 지원인 경우 허용보조금으로 분류, 상계판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환경보조금 인정

- 조 건

- 비반복적, 일회적 조치이어야 하며
- 적응비용의 20%로 한정되어야 하고
-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대상 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며,
- 기업의 오염 및 폐해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하여야 하며
- 제조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고
- 새로운 설비 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한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해야 함

4. 농산물협정

○환경보전 목적의 보조금은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함(농업협정부속서 II 12항)

5. 지적재산권 협정(27조 2항)

○공서양속,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건강의 보호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체약국 국내에서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함

III. 무역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채택 : '97. 9.16, 발효 : '89. 1. 1

- 우리나라는 '92. 2.27 가입

○체결목적 : 성충권의 오존층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행동을 강화

○무역관련 규정

- 무역규제 조치는 비체약국에게만 효력
- 체약국은 1991. 1. 1부터 규제된 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93. 1. 1부터 규제된 물질의 수출을 금지
- 또한 체약국은 비체약국에게 관련기술의 수출도 금지
- 체약국은 '93. 1. 1부터 CFC 함유제품의 수입을 금지(1990년 수정, 미발효)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채택 : '73. 3. 3, 발효 : '75. 7. 1

- 우리나라는 '93. 7. 9 가입

○체결목적 :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현세대 및 후세대를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지구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며 국제무역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특정야생동·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

○무역관련 규정

-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규정된 종에 대해서

는 체약국 과학당국의 수·출입 승인서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

- 부속서 III에 규정된 종에 대해서는 체약국의 과학당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를 제출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채택 : '89. 3.22, 발효 : '92. 5. 5

- 우리나라는 '94. 2.28

○체결목적 : 폐기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국제적 협력강화

○무역관련 규정

- 부속서 I에서 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부속서 II에서 유해폐기물의 특성을 정의
- 체약국은 비 체약국과 부속서에 정해진 유해폐기물의 교역금지
- 체약국간에 부속서에 정해진 유해폐기물의 교역시 수출국은 수입국·통보하고 수입국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교역을 위한 재수입금지

4. 국제식물보호협정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Agreement)

○채택 : '51.12. 6, 발효 : '52. 4. 3

- 우리나라는 '53.12. 8 가입

○체결목적 : 식물 전염병의 통제와 식물제품의 규제, 이들 질병 및 제품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국제협력 증진과 강화

○무역관련 규정

- 체약국들은 필요한 경우 금지, 검사, 발송물 파기 등을 통해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 수출을 엄격히 규제함(제6조)

5. 동남아 및 태평양 연안의 식물보호협정
(Plant Protection Agreement for the South East Asia Pacific Region)

○채택 : 56. 227, 발효 : 56. 7. 2

- 우리나라는 81.11. 4 가입

○체결목적 : 질병, 병충해 기타 식물에 유해한 물질의 해당지역으로의 유입을 방지함

○무역관련 규정

- 각국은 지역 외부로부터 식물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동남아 및 태평양 연안 식물보호위원회가 제안한 금지, 인증, 검사, 방역, 구제, 검역, 파기 기타 조치들의 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제3조)

* 국제식물보호 협정에서 파생된 협정

6. 자연 및 천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ASEAN 협정
(ASEAN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채택 : '85. 7. 9, 미발효

○체결목적 : ASEAN 지역의 천연자원 보전과 관리를 위한 개별국가의 활동과 협력 증진방안 강구

○무역관련 규정

- 체약국들은 멸종위기에 있다고 인식되는 종의 보전과 그 교역을 규제해야 함

7. 자연상태의 동 · 식물 서식군 보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eservation of Fauna & Flora in their Natural State)

○채택 : '33.11. 8, 발효 : '36. 1.14

○체결목적 :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 설정 등을 통해, 특히 아프리카 등의 자연동식물 서식군을 수렵, 포획으로부터 보존

○무역관련 규정

-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렵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못함
- 체약국은 각국 영역내에서 국내법에 저촉되게 포획한 수렵물의 국내수입이나 수출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제9조)

8. 서반국의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협약
(Convention on Nature Protection and Wildlife Preserv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채택 : '40.12.10, 발효 : '42. 5. 1

○체결목적 : 미주지역의 천연 동 · 식물의 종을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존, 지질학적 기형지역, 역사적 유적지, 과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의 보존

○무역관련 규정

- 수출허가를 통한 보호대상물의 교역규제(제9조)

9. 국제 조류보호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Birds)

○채택 : '50.10.18, 발효 : '63. 1.17

○체결목적 : 조류의 숫자 유지보호, 특히 철새의 멸종방지

○무역관련 규정

- 보호기간중에 포획, 살생된 조류, 산조류의 판매를 위한 제공, 운반, 수출, 수입의 금지(제3조)
- 산란기간중 야생상태에 있는 조류의 란, 껍질 및 새끼의 판매를 위한 제공, 운반, 수출, 수입의 금지(제4조)

10. 자연 및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
(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채택 : '68. 9.15, 발효 : '69. 6.16

○체결목적 : 아프리카 대륙의 토양, 수자원, 동물 서식지 등의 보존, 이용, 개발

○무역관련 규정

- 체약국은 모두 동·식물에 대해 견본이나 포획 물의 운반, 교역을 규제해야 하며, 불법적인 포획, 실상을 방지해야 함
- 포획물의 교역, 보호 등·식물종의 운반에 대한 허용기준 요건
 - 사냥, 살상, 수집, 포획 등에 요구되는 기준이 상일 것
 - 최종 목적지가 표시될 것
 - 합법적인 것에 한함
 - 수출이전에 검사의뢰할 것

11. 수렵 및 조류보호에 관한 베네룩스 협약
(Benelux Convention on the Hunting and Protection of Birds)

○채택 : '70. 6.10, 발효 : '72. 7. 1

○체결목적 : 야생상태의 조류보호와 수렵에 대한 국가간 규정의 조화

○무역관련 규정

- 제3국과의 조류교역에 있어서
 - 살아있거나 죽은 포획물의 수출, 수입, 운반은 사안이 발생한 상대국에서 발효중인 규정에 의해 규제됨(제6조)
 - 살았거나 죽은 조류와 그 알, 새끼들의 수출, 수입, 운반 등은 해당사안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함(제9조)

12. 북극곰 보호협정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Polar Bears)

○채택 : '73.11.15, 발효 : '76. 5.26

○체결목적 : 북극곰의 포획, 살상의 금지 및 곰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 보호

○무역관련 규정

- 체약국의 곰서식지로부터 불법적으로 곰이나 곰의 일부 혹은 곰제품을 수출, 수입, 반입, 유통시키는 행위금지(제5조)
 - * 체약국 : 캐나다,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구) 소련

13. 비큐냐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Vicuna)

○채택 : '79.12.20, 발효 : '89.12.31

○체결목적 : 비큐냐의 보호, 관리

○무역관련 규정

- 연구나 증식목적 이외의 생식가능한 비큐냐의 정액이나 생식관련 물질의 수출금지(제4조)
 - * 체약국 : 라틴 아메리카 제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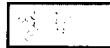
14. 북태평양 서식 바다물개 보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North Pacific Fur Seals)

○채택 : '87. 9.16, 발효 : '57.10.14

○체결목적 : 북태평양 서식 바다물개의 자원의 지속가능한 최대 생산성유지

○무역관련 규정

- 북태평양 연안에서 채취한 물개표피의 체약국 내로의 수입, 반입, 교역 등을 미·소 등의 연구 목적 혹은 원주민의 채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금지되며 불법적 포획물을 압수됨(제8조)



* 체약국 : 캐나다, 일본, 미국, 소련

15. 국제적 운송중의 동물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채택 : '68.12.13, 발효 : '71. 2.20

○체결목적 : 가능한 한 운송중의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

○무역관련 규정

- 협약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의 국제적 운송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을 적용함

16. 아프리카 식물검역협약
(Phyto-sanitary Convention for Africa)

○채택 : '67. 9.13

○체결목적 : 이 지역내로의 질병, 병해충 기타 천적들의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무역관련 규정

- 각 체약국은 식물의 수입을 통제해야 하며 아프리카 연맹기구(OA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지, 검역, 인증, 식물의 종자나 포장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음

17. 식물검역 및 병해충·질병으로부터의 식물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Concerning the Cooperation in the Quarantine of Plants and their Protection Against Pests and Diseases)

○채택 : '59.12.14, 발효 : '60.10. 9

○체결목적 : 해충, 잡초, 질병으로부터 식물의 방역

○무역관련 규정

- 한 국가로부터 타국가로 이송되는 식물 원종자의 발송, 수입, 수출, 운반에 대해 통일적인 식물

검역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협력함

* 체약국 : 중부 및 동부유럽 및 구소련

18. 남태평양에서의 유자망을 사용한 고기잡이 금지를 위한 월링턴 협약
(Wellington Convention for prohibition of fishing with Long Driftnets in the South Pacific)

○채택 : '89.11.24, 발효 : 91.5.17

○체결목적 :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태평양에서의 유자망 사용 금지

○무역관련규정 : 각 협약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유자망을 사용하여 잡은 물고기 혹은 물고기의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

19.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 '92.5.9, 발효 : 1994.3.21

○체결목적 :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가간 약속을 통하여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함.

○무역관련규정

- 비당사국에 관한 무역규제조항이나 협약 자체에 직접적인 무역조항은 없음
- 그러나 협약 3조5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이나 부당한 차별로 작용해서는 안됨을 규정

20. 살충제의 사용과 유통에 관한 UNFAO 행동규약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esticides, UNFAO)

○채택 : '1985, 개정 : 1989

○체결목적 : 살충제의 사용과 배포에 있어 잡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표준행동규약

을 마련하기위함.

○무역관련규정(8조,9조)

- 거래가 제한된 살충제 수출업자는 수출에 앞서 수출국가에 사전통고승인 필요
- 살충제의 국제거래에 있어 광고, 유통, 처분, 저장, 포장, 표지, 시험에 관한사항 관장
- 살충제 수출국가는 국내에서 거래가 제한된 살충제에 대해 수입국가에 통고

21.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채택 : '93.5.22, 발효 : 1993.12.29
가입 : '94.10.3

○채결목적 :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관리

○무역관련규정

- 협약 자체에 직접적인 무역조항은 없음

- 그러나 협약 16조, 기술이전 및 접근과 관련, 협약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및 특허가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권리가 상호 지지적이고 충돌하지 않도록 각국 입법 및 국제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동조항은 TRIPS 협정 이행 및 응용과 관련, 무역과 연관이 있음

22. 국제열대목재협정, 94년 재협상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ITTA), renegotiated in 1994)

○채택 : '94.4.1, 발효 : 1994.5.1

○체결목적 : UNCED의 의제 21 제 2장, 11장 맥락에서 재협상

○무역관련규정

- 무차별규정(36조), 국제무역에 있어서 특히 목재나 목재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금지나 제한 조치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실무환경』 투고(投稿)안내

“환경보전”지는 환경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무환경』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과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기술 및 사례, 그밖에 관련내용 들로 접필하여 적극적인 투고(投稿)를 바랍니다. 특히 환경관리 및 방지시설에 있어서 현장(사업장 등)에서 꼭 필요한 기술 및 성공사례, 친화기업 지정사례(ISO-9000, 14000인증 획득 사례) 등으로 동종의 업종에서 종사하는 환경관련인들과의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약 래 —

- 제 목 : 제한없음
- 분 량 : 워드 80컬럼 × 24줄 6매 내외(200자원고지 45매)
- 마 감 : 매달 20일
- 참 고 :
 - 원고는 원본과 플로피 디스켓 저작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컴퓨터 통신 e-mail를 통해 보내주실 경우, ↘ ID : 하이텔 - KEPA, 천리안 - DKEPA ↘ Internet e-mail : KEPA@hitel.kol.co.kr
 - 원고와 관련된 참고사진과 접필자의 사진, 약력,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원과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130-035) 서울 동대문구 담십리 5동 497-66 서울상공회의소 동부지소빌딩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Tel : 02-216-3882, 02-249-5265/6 Fax : 02-249-5267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와 “환경보전”지를 보내 드립니다.